

한국치위생학회지 논문심사규정

2001년 3월 제정

2006년 3월 개정

2008년 3월 개정

2011년 3월 개정

2021년 2월 전면 개정

2024년 4월 개정

제 1조 본 규정은 한국치위생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4항에 따라 한국치위생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 3조 논문은 치위생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, 치위생학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, 학위논문임을 명시할 경우 학위자가 제1저자,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만 게재할 수 있다.

제 4조 투고 자격과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.

제 5조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6조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저자 및 동일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7조 심사 결과는 논문심사평가항목 표기 및 심사의견서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가', '수정 후 재심' 및 '게재 불가'로 판정한다.

- ① '게재가'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.
- ② '수정 후 게재가'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.
- ③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'게재 불가'의 판정 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.
 1. 연구주제가 치위생학의 유의미성이 결여된 경우
 2.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표절한 경우
 3.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
 4.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본 학회지의 윤리 규정 및 기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
6. 기타(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한 경우)

제 8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
제 9조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'게재 불가'로 판정한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.

제 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심사 수락을 해야 하며,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. 단,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1조 투고자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수정권고사항에 따른 수정 논문을 10일 이내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.

제 12조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 1편에 20,000원의 심사비를 심사위원의 계좌로 입금한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의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의 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본 규정의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본 규정의 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본 규정의 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